

배임·횡령사건을 통해 본 중소기업의 지배구조 개선과제*

연구위원 정윤모

중소상장기업에서 횡령 및 배임과 같은 기업의 재무적 기초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사건이 끊임 없이 발생하고 있다. 이로 인해 당해 기업과 수많은 투자자들이 막대한 피해를 입고 있으며, 나아가 자본시장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지고 있다. 특히 횡령 및 배임규모가 커서 상장폐지로 이어지는 등 중소기업의 기업은 그 존립 기반마저 무너지는 경우가 많다. 배임·횡령사건으로 인한 기업의 도산은 정상적인 경영하에서 일어나는 기업의 흥망성쇠와는 성격이 다른 것으로서, 기업지배구조나 내부통제시스템이 제대로 정비되었더라면 사전에 예방할 수 있었던 범죄행위의 결과에 지나지 않는다. 기업의 운명이 사업 자체의 성패에 의해 결정되지 못하고, 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기본적인 토대라 할 수 있는 지배구조나 내부통제시스템에 의해 결정된다는 사실은 우리기업들의 후진적인 모습을 명백하게 드러내는 것이다.

배임이나 횡령은 업무상 타인에 대한 신임관계에 위배하여 타인의 재물을 영득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는 범죄행위이다. 기업지배구조나 내부통제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기업에서는 배임이나 횡령사건처럼 기업경영자에 의

해 신임관계가 무너지는 사건이 발생하기 어렵다. 배임이나 횡령은 기업경영을 담당하는 대표이사나 최대주주 등이 기업경영권을 장악한 것을 계기로 하여 기업재산을 초법적으로 약탈하는 행위로서, 기업지배구조와 내부통제시스템이 제대로 정착된 기업에서는 사전 통제장치에 의해 억제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대규모 배임이나 횡령사건이 일어난다는 것은 기업내부의 지배구조나 내부통제장치에 치명적인 취약점이 존재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 동안 우리나라는 기업지배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꾸준히 노력해왔다. 특히 1998년 IMF 외환위기를 계기로 하여 사외이사 및 감사위원회제도의 도입, 소수주주권의 강화, 회계의 투명성 제고 등 기업의 지배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무수한 제도정비를 추진해 왔다. 그러나 아직도 일부 중소기업에서 거대 규모의 배임·횡령사건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은 이러한 지배구조 개선노력이 아직 이들 기업들에서는 제대로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자본시장의 선진화를 위해서는 대리인 문제(agency problem)의 극단적인 형태라고 볼 수 있는 배임·횡령사건과 같은 투자위험으로부터 벗어나 투자자들이 안심하고 투자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어야 한다. 여기서

* 본고의 견해와 주장은 필자 개인의 것이며, 자본시장연구원의 공식적인 견해가 아님을 밝힙니다.



는 먼저 거래소시장에 상장된 기업들에 대한 배임·횡령사건 실태의 심각성을 살펴보고, 기업지배구조를 중심으로 배임·횡령과 관련된 문제점들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검토해 보기로 한다.

중소상장기업의 배임 및 횡령사건 실태분석

최근 5년여에 걸쳐 상장기업이 거래소에 신고한 배임·횡령사건들을 분석해 보면, 중소상장기업의 배임·횡령 양상이 매우 심각함을 알 수 있다. 해당기간 중 유가증권시장은 40개사, 코스닥시장은 146개사 등 총 186개사에서 배임·횡령사건이 발생하였다. 이들 기업에서 발생한 배임·횡령금액은 총 3조 4,192억원으로, 1개사당으로 치면 183억원이었다. 구체적으로 보면 유가증권시장의 경우 배임횡령총액이 1조 112억원, 평균 배임횡령액이 252억이었고, 코스닥시장의 경우 배임횡령총액이 2조 4,079억원, 평균배임횡령액이 164억원이었다. 코스닥시장의 경우 배임횡령금액이 유가증권시장에 비해 2.38배 정도 높게 나타났다. 양시장간의 규모 격차를 고려하면 코스닥시장의 문제가 심각함을 알 수 있다.

상장기업들의 배임·횡령사건 규모는 자기자본(자본잠식상태인 경우에는 자본금) 대비 164.7%에 이를 정도로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났다. 코스닥시장 상장기업의 평균배임·횡령사건 규모는 자기자본 대비 187.6%로 유가증권시장 상장기업의 78.8%에 비해 매우 크다. 이러한 대규모의 배임·횡령사건이 발생하면 당해 기업의 재무적 기초가 붕괴되어, 계속기업으로서의 존속능력을

상실하게 될 우려가 높다.

배임·횡령을 저지른 위반행위자는 대부분 대표이사와 대주주로서 이들은 당해 기업에 대한 소유·경영지배권을 장악한 것을 계기로 매우 다양한 수법을 동원하여 기업재산을 대규모로 착복하는 경향을 보였다. 먼저, 기업경영권을 장악하고 있는 대표이사, 이사, 집행임원 등과 같은 경영진과 최대주주, 주요주주 등과 같은 대주주가 주된 범죄행위자였다. 한편 범죄수법을 보면, ① 회사자금(현금, 예금, CD, 어음·수표)의 무단 인출, ②유상증자대금 및 사채납입대금의 무단 인출, ③회사자금의 대여 또는 타회사 투자 후 유용, ④타회사에 대한 부실투자, ⑤타회사 투자주식 또는 보유 자기주식의 무단 인출·사용, ⑥어음·수표의 불법적인 발행 후 할인·유용, ⑦불법적인 지급보증 또는 담보제공, ⑧불법적인 자금조달·차입 후 무단 인출, ⑨선금금·가지금금지급 후 반대급부의 확보 곤란 초래, ⑩보유주식 양도 후 매도대금 미확보, ⑪불법적인 부동산 매도 후 대금 유용, ⑫허위·불량 채권의 고가매입, ⑬재고자산 과대계상 등 실로 다양한 수법이 동원되고 있다.

대규모 배임·횡령으로 인해 상당수 기업들은 기업의 재산적 기초를 상실하고 거래소로부터 상장폐지 내지 관리종목 지정을 당하여 수많은 투자자들의 피해가 초래되었다. 배임·횡령사건을 공시한 기업 중에서 49%에 해당하는 기업들은 결국 상장폐지되어 배임·횡령사건과 상장폐지 사이에 밀접한 상관관계가 있음을 보여 준다. 유가증권시장은 40%에 해당하는 기업이, 코스닥시

장은 52%에 해당하는 기업이 상장폐지로 시장에서 퇴출되었다. 게다가 상장이 유지된 나머지 기업 중에서도 상당수가 관리대상 종목으로 지정되었다.

기업지배구조 등의 개선을 위한 과제

배임 및 횡령은 기업의 비정상적인 경영과정에서 발생하는 사건으로서, 배임·횡령사건을 통해 중소기업이 많은 코스닥시장 상장기업들의 지배구조 및 내부통제시스템이 유가증권시장 상장기업에 비해 매우 취약함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중소상장기업의 경영투명성과 투자자보호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배임·횡령사건을 억제할 수 있는 사전적인 기업경영 감시시스템에 대한 보완이 요구된다. 이러한 문제는 여러 복합적인 요인이 작용하여 발생한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그에 대한 해결방안의 모색도 복합적인 접근방법을 취하는 것이 정도라 생각된다.

우선, 부실한 지배구조나 내부통제로 인하여 투자자의 피해를 초래하거나 시장의 건전성을 저해하는 위법사례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서는 사전적으로 기업의 자본시장 진입단계에서 기업지배구조와 관련된 상장심사를 강화해야 한다. 특히 코스닥시장의 경우, 중소유망기업의 자금조달 기회를 저해하지 않는 선에서 상장심사를 엄격히 하여 기업지배구조와 내부통제시스템이 제대로 정비된 기업만 시장에 진입할 수 있도록 기업선별 작업에 역량이 집중되어야 한다. 문제의 사후적 해결을 위해 막대한 시간적·경제적 비용을 지불하기 보다는 위법행위를 사전적으로 차

단하는 방법이 보다 효율적이기 때문이다. 한편, business item 혹은 model의 소진이나 잦은 경영권 변동으로 한계상황에 봉착한 기업들에 대해서는 집중적인 monitoring을 통해 투자자와 시장건전성에 대한 피해를 최소화하면서 exit할 수는 단계별 프로그램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즉, 기업의 계속적 존속능력에 문제가 발생한 기업에 대해서는 거래소나 감독당국의 집중적인 감시가 요구되며, 이 과정에서 취득된 정보가 투자자나 시장에 신속하고 정확하게 전달될 수 있는 시스템을 정비하여야 한다. 대규모 배임·횡령으로 기업의 재무적 토대가 심각하게 훼손되었거나 내부통제시스템의 정상적인 작동이 담보되지 않는다고 판단되는 기업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퇴출을 단행하여야 할 것이다.

기업경영에 대한 감시기능을 수행하는 내부의 사외이사·감사위원회와 외부의 회계감사간의 연계강화를 통해 지배구조 및 내부통제의 개선을 도모하여야 한다. 상당수의 배임·횡령사건은 외부감사인에 의한 외부감사 과정에서 발견되며, 이 중 상당수는 내부인에 의한 정보 제공이 단초가 되는 경우가 많다. 기업내부에서 경영사안 전반에 대해 감독하는 사외이사와 기업외부에서 한정된 회계부문에 대해 감사를 하는 외부감사는 정보취득원이나 전문성이 상이하므로 이들 간의 정보교류 등 상호보완적인 활동이 강화된다면 기업경영 감독에 대한 시너지효과 확보가 가능하다. 이를 위해 주기적인 회동을 통해서 상호 보유하고 있는 정보를 교류하고 문제포착시 대응방안을 공동으로 모색하는 방법이 있다.



체계적이고 상시적인 사외이사 지원체제를 마련하기 위해서는 사외이사협의회를 설치하여 연 1~2회 정기간담회를 실시하도록 하는 사외이사들 간의 정보 교류 및 지원 정책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사외이사협의회는 감독 및 규제의 최소화를 위해 상장회사협의회나 코스닥협회 별로, 또는 거래소별로 자율적 운영기구의 형태로 설치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감독당국, 거래소, 상장기업협회 입장에서도 사외이사 교육연수 및 지원 정책을 실시함에 있어 효율적인 창구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현재 사외이사 1인 상장기업이 많은데, 최소한 2인 이상의 사외이사를 두도록 권고한다. 이사회에서 사외이사 1인만으로는 적극적인 의견 반영이 어려울 수 있으며, 사외이사 중심으로 구성되어야 할 사내기구도 사외이사가 1인인 경우에는 설치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감사위원회의 설치가 의무화되어 있지 않은 자산 2조원 이하 중소상장기업의 경우에도 감사위원회의 도입을 권고한다. 사외이사 중심의 감사위원회를 통해 외부감사인의 선임 등에 관한 논의를 감사위원회에서 구체화함으로써 외부감사인의 선임과 외부감사 과정의 독립성과 객관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회사나 경영진으로부터 독립하여 전체 주주들의 이익을 골고루 반영할 수 있는 의사결정을 위해서는 주주들의 주주총회 참여를 현실적으로 가능하게 할 수 있는 전자투표나 서면투표 제도를 적극 활용하도록 유도한다. 현재 대다수 주주들이 시간적·공간적 제약으로 인해 주주총회에 참석하기 곤란하게 된 결과로, 주

주총회는 회사의 중요한 의사결정이나 기업경영의 통제라는 본연의 기능을 상실하고 주로 대주주나 경영진의 이해를 반영하는 형식적인 기관으로 전락하였다. 그러나 최근 도입된 전자투표제도를 활용한다면 주주총회 참석에 무관심한 소액주주 등 다수 주주들의 주주총회 참여를 유도하여 유명무실화된 주주총회의 기능을 상당부분 회복할 수 있을 것이다. 전자투표제도와 관련하여 shadow voting 제도를 폐지한다면, 상장기업은 주주총회에서의 의결정족수를 확보하기 위해서라도 전자투표제도를 적극적으로 이용할 유인이 생기게 될 것이다.